

#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03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08. 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·징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상업광고 욕구 해소를 통한 불법유동광고물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
-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통해 징수한 사용료 수익으로 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 비용에 충당함으로써 시 재정증대에 기여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규정함. (안 제3조)
- 나. 수탁업자의 선정방법, 자격조건, 위탁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. (안 제4조~안 제5조)
- 다.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,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6조~안 제7조)

- 제정조례안 : 불임1
-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2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-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기간 : 2017. 6. 28. ~ 7. 18.(20일간)

## □ 기타 참고사항

- 방침결정문 : 불임3

## < 별임 1 >

#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1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·징수와 광고 표시와 관련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공공시설물” 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7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.

1. 버스승강장
2. 노선버스 안내표지판
3. 택시승강장
4. 현수막지정게시대

**제3조(시설물의 광고표시 및 사용료)** ① 영 제17조에서 정한 시설물의 광고 표시는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**제4조(수탁업자의 선정 등)**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광고 표시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업자”라 한다)는 시장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1.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
  2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,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
  3. 안산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
- ②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

시장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5조(위탁의 취소)** 시장은 수탁업자에게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6조(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)**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.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 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시장은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사용료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.

**제7조(과태료)**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2018. 1. 1.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도시디자인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도시디자인과장 전 재 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·전화	도시미관팀장 한상길(행정2642)

【별표】

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부과기준

공공시설물 유 형	사용료 부과기준 (월별)	비 고
버스승강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측면광고 1개소 당 50,000원</li> <li>○ 후면광고 1개소 당 20,000원</li> </ul>	
노선버스 안내표지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소별 <math>1\text{m}^2</math> 이하 5,000원</li> <li>○ <math>1\text{m}^2</math> 초과 시 <math>0.1\text{m}^2</math>당 500원 가산</li> </ul>	
택시승강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소별 <math>1\text{m}^2</math> 이하 30,000원</li> <li>○ <math>1\text{m}^2</math> 초과 시 <math>0.1\text{m}^2</math>당 3,000원 가산</li> </ul>	
현수막 지정제시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소별 <math>1\text{m}^2</math> 이하 30,000원</li> <li>○ <math>1\text{m}^2</math> 초과 시 <math>0.1\text{m}^2</math>당 3,000원 가산</li> </ul>	현수막 제시틀

# **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의 안 번 호	3034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9월 일  
제 안 자 : 도시환경위원장

## **□ 수정이유**

- 안산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수탁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조항에서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특정 단체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, 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을 준수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함.

## **□ 주요내용**

- 공공시설물의 광고 표시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를 삭제함.  
(안 제4조)
- 수탁업자의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관련 조항을 따르도록 함.(안 제5조)

# **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,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”를 “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계약취소 등) ① 시장은 수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해지를 원한 때

2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관리위탁을 개신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3. 법령이나 조례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때

4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거나 광고료를 징수한 때

5. 그 밖에 시장이 지도·감독 등에 따라 관리위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미리 수탁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수탁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,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다.

안 부칙 중 “2018. 1. 1.” 을 “2018년 1월 1일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### □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조례안	수정안
<p><b>제4조(수탁업자의 선정 등)</b>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광고 표시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받은 자(이하 "수탁업자"라 한다)는 시장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</li> <li>2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,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</li> <li>3. 안산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</li> </ul> <p>②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<b>제5조(위탁의 취소)</b> 시장은 수탁업자에게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</p>	<p><b>제4조(수탁업자의 선정 등)</b>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광고 표시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받은 자(이하 "수탁업자"라 한다)는 시장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</li> <li>2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</li> <li>3. 안산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</li> </ul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5조(계약취소 등)</b> ① 시장은 수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</p>

<p>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	<p><u>있다.</u></p> <p><u>1. 스스로 해지를 원한 때</u></p> <p><u>2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관리 위탁을 간신히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</u></p> <p><u>3. 법령이나 조례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때</u></p> <p><u>4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거나 광고료를 징수한 때</u></p> <p><u>5. 그 밖에 시장이 지도·감독 등에 따라 관리위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</u>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미리 수탁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수탁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,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다.</p>
<p>부칙</p>	<p>부칙</p>
<p>이 조례는 2018. 1. 1.부터 시행한다.</p>	<p>이 조례는 <u>2018년 1월 1일</u>부터 시행한다.</p>